

(붙임)

「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주요개정내용

I 주요 개정내용

1. 전략산업 업종 추가

□ 광주, 전남의 신성장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업, 의료관련 제조업, 축전지(이차전지) 제조업을 전략산업부문에 추가

*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, 1차 철강 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, 전자부품제조업, 금형산업, 자동차부품제조업, 광산업 및 관련산업, 신재생에너지 산업

○ 지능형 가전·소재·부품, 바이오 헬스케어 등 ICT 융합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정보통신업* 및 의료관련 제조업**을 추가하고 이차전지 등 차세대배터리산업 지원을 위해 축전지 제조업도 추가

* 시스템,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,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

**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, 의료용 기기 제조업

○ 이에 따라 전략산업으로 추가되는 정보통신업 영위 업체가 지역특화산업 지원대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특화산업의 정보통신업 업종코드를 정비*

* 기존 :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표준산업분류코드 582)

개정후 :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표준산업분류코드 5822)

전략산업 업종추가 개정전후 비교

<A8 지역전략산업 세부분류>

<신설>	<신설>	⇒	의료관련 제조업	271 21	의료용 기기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
<신설>	<신설>		정보통신업	5822 6201	시스템, 응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
<신설>	<신설>		차세대배터리 제조업	28202	축전지 제조업

<A7 지역특화산업 세부분류>

정보통신업	582 5911 5912	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	⇒	5821 5911 5912	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	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

2.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정비

□ 「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」을 전략산업 영위 기업으로 한정

- 업종제한 없이 운영해 오던 「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」을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(A8)에 대해서만 적용

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지원대상(A8) 개정전후 비교

<개정전>

지원 대상
– 1차 철강 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, 전자부품 제조업, 금형산업 등 업종 영위 기업
–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
– 뿌리기술전문기업
–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· 지자체 선정 일자리우수기업 ·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2개월전 대비 5인 이상 혹은 10% (2인) 이상 순증한 기업
– 공기산업 관련 중소기업
– 경제자유구역 입주 중소기업

<개정후>

지원 대상
– 1차 철강 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, 전자부품 제조업, 금형산업 등 업종 영위 기업
–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
– 뿌리기술전문기업
– 공기산업 관련 중소기업
– 경제자유구역 입주 중소기업
※ 위 기업중 아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전략지원한도 배정시 우대 · 지자체 선정 일자리우수기업 ·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2개월전 대비 5인 이상 혹은 10% (2인) 이상 순증한 기업

3.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정비

- 전략지원 대상 농림축산업자 및 농어업법인을 「농업, 임업 및 어업」(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~03) 영위 업체로 한정
 - 도소매 등 농림수산업외 기타 업종을 영위하는 농림축산업자 등을 전략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농림수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
 - 전략지원에서 제외되는 도소매 등 「농업, 임업 및 어업」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농림축산업자 등은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(A7)에 추가하여 일반지원부문으로 지원

개정전후 비교

<개정전>

전략지원	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~03 영위 기업
	농림축산업자, 농어업법인

⇒

<개정후>

전략지원	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~03 영위 기업 (농림축산업자, 농어업법인 포함)
	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~03 이외의 업종 을 영위하는 농림축산업자, 농어업법인

II

시행일자

- 2023. 3. 2일(2023.5월 배정분)부터 시행